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정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최근 국토교통부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노후·불량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하고, 노후화된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.

○ 이에 서울시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노후·불량건축물 수의 완화비율 등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인 정비 활성화를 위해 관리지역에서는 노후·불량건축물의 경과연수를 20년으로 완화하는 한편, 정

비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정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